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안 제5조)

❍ 금융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의 목록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가능 규정, 사업비 보조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저한 공로 인정 시 표창 가능함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대출사기 등의 형태를 띄는 범죄 행위임.
-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들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지난달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하여 금융·통신 분야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수사를 아우르는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에 대한 정부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책임,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11.9.30. 제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 복지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본 조례안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신,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로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가 있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7

발의연월일: 2025. 11. 6.
발 의 자: 이규선·최봉희·이순우
최인순·우경란·이성수
임헌호·신흥식·차인영
정선희 의원 (10인)

1.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안 제5조)

다. 금융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라.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